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22호 2022. 6. 21.(화)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87호 군도12호선(시문~동천)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1
남해군 고시 제2022-8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5
남해군 고시 제2022-90호 둔촌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	7
남해군 고시 제2022-91호 원예예술촌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	8
남해군 고시 제2022-93호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9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810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	21
남해군 공고 제2022-812호 공시송달 공고 .....	24
남해군 공고 제2022-813호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5
남해군 공고 제2022-82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30
남해군 공고 제2022-830호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31
남해군 공고 제2022-833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35
남해군 공고 제2022-851호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36
남해군 공고 제2022-852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	38
남해군 공고 제2022-857호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	40
남해군 공고 제2022-864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5
남해군 공고 제2022-865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8
남해군 공고 제2022-866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1
남해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4호 2022년도 남해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	54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87호

군도12호선(시문~동천)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동천리 일원에 위치한 군도12호선(시문~동천) 확포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남 해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군도	12	시문 ~ 동천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동천리 일원	119,989.4	삼동면 영지리 1196-6	삼동면 동천리 산402-1	-	5.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군도12호선 선형개량 및 확포장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 일로부터 ~ 2026.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1 참고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실음생략 (남해군 건설교통과 비치)

**남해군관리계획(도로: 소로2-73호선) 결정(변경) 조서**

- 군도12호선(시문~동천) -

□ 남해군관리계획(도로: 소로2-73호선)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72	8	보조 간선도로	6,538	삼동면 봉화리 986-5	삼동면 봉화리 2242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1호선
변경	소로	2	72	8	보조 간선도로	6,539	삼동면 봉화리 986-5	삼동면 봉화리 2242	일반 도로	-		군도11호선
기정	소로	2	73	8	보조 간선도로	7,864	이동면 난읍리 1794-1	삼동면 동천리 산400-2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2호선
변경	소로	2	73	8	보조 간선도로	7,837	이동면 난읍리 1794-1	삼동면 동천리 산400-2	일반 도로	-		군도12호선
기정	소로	2	111	9	집산 도로	882	삼동면 봉화리 1036-4	삼동면 봉화리 1159-3	일반 도로	-	남해군 고시 제2017-6호 (2017.01.25.)	
변경	소로	2	111	9	집산 도로	897	삼동면 봉화리 2322	삼동면 봉화리 1159-3	일반 도로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보) 2-72	소로(보) 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연장 변경</li> <li>연장 : 6,538m → 6,539m(증: 1m)</li> </ul>	·군도12호(시문~동천)확포장공사에 따른 교통 시설 선형변경 및 교통시설 사면부를 교통시설로 결정함으로 인한 접속부 소로2-72호선 연장 증가 및 가각부 변경.
소로(보) 2-73	소로(보) 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선형변경 및 시설연장축소</li> <li>연장 : 7,864m → 7,837m(감: 27m)</li> </ul>	·군도12호(시문~동천)확포장공사에 따른 교통 시설 선형변경 및 교통시설 사면부를 교통시설로 결정.
소로(집) 2-111	소로(집) 2-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연장 및 종점변경</li> <li>기점 : 기정(봉화리 1036-4) → 변경(봉화리 2322)</li> <li>연장 : 882m → 897m(감: 15m)</li> </ul>	·군도12호(시문~동천)확포장공사에 따른 교통 시설 선형변경 및 교통시설 사면부를 교통시설로 결정으로 인한 접속부 소로2-111호선 연장 증가 및 가각부 변경.

**남해군계획시설(도로: 소로2-73호선) 실시계획인가 사항**

- 군도12호선(시문~동천) -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시문)~동천리(동천)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해군계획시설사업(소로2-73호선) 정비공사
    - 명 칭 : 군도12호선(시문~동천)확포장공사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L=5,235m, B=8m, A=119,989.4m<sup>2</sup>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 명 : 남해군수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 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사업의 준공 예정일 : 2023년 12월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1 참고
  - 7. 관계도서 : 실음생략(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
-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 : 남해군 홈페이지 참고

남해군 고시 제2022-89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541-56 외 19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219-28 외 3건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효력 발생일	비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55-860-3642~364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지정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 여

업무구분	중진주소	도로명주소	호적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1489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541-56	20220631	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 179-2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695번길 35	20220630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519-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568-5	20220630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48-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357	20220624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208-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43번길 11-35	20220624	화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1423-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진로 1302-26	20220624	고려 충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28-1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495번길 53-4	20220624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186, 188-1, 19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946-8	20220519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임원리 92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당남로 8	20220519	내금의 옛 이름을 이용. 당집(무속인들이 살던 집) 너머에 있는 마을이란 뜻임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215-3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490-10	20220518	남해본성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2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590-47	2022051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1169-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602-10	20220517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40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신소로75번길 68-36	20220516	신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302-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7	20220516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47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668번길 98	20220512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차장리 476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49-18	20220512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흔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흔면 오곡리 877	경상남도 남해군 고흔면 남해대로 3487-11	20220510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8-3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진로 903-18	20220506	고려 충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8-3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진로 903-14	20220506	고려 충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8-3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진로 903-16	20220506	고려 충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변 경

업무구분	중진주소	도로명주소	호적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219-2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219-28	20220631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며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세먼스타원선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219-2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219-36	20220631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며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세먼스타원선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고실로396번길 30-5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고실로396번길 30-1	20220625	고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1425-6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1425-2	20220518	남해군의 동부대로	

남해군 고시 제2022-90호

### 둔촌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동천리 일원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남 해 군 수

#### 1. 하수처리구역 결정조서

연 번	구역명	위 치	면 적(k㎡)	비 고
1	둔촌	남해군 삼동면 둔촌, 화천, 금천마을 일원	0.17k㎡	

#### 2. 하수처리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위 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둔촌	남해군 삼동면 둔촌, 화천, 금천마을 일원	신설	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에 따름

#### 3.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하수처리구역도 공람장소 : 남해군 환경물관리단 하수도팀 (☎055-860-3335)



남해군 고시 제2022-91호

### 원예예술촌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일원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처리 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남 해 군 수

#### 1. 하수처리구역 결정조서

연 번	구역명	위 치	면 적(k㎡)	비 고
1	원예	남해군 삼동면 동천, 내동천, 화암마을 일원	0.25k㎡	

#### 2. 하수처리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위 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원예	남해군 삼동면 동천, 내동천, 화암마을 일원	신설	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에 따름

#### 3.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하수처리구역도 공람장소 : 남해군 환경물관리단 하수도팀 (☎055-860-3335)

남해군 고시 제2022-93호

###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및 제80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055-860-8655)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6일

### 남 해 군 수

#### 1.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관광지명 : 송정관광지(변경없음)
- 나.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20-1번지 일원(변경없음)
- 다. 지정면적 : 604,018㎡(변경없음)
- 라. 사업기간 : (기정)1998년 ~ 2021년 → (변경)1998년 ~2024년(3년 연장)
- 마. 관광지 조성권자 : 남해군수(변경없음)
- 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변경없음)

#### 1) 시설지구계획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비 고
총 계	604,018	100.0	
공공편익시설지구	105,101	17.4	주차장, 우수처리장, 샤워탈의장/화장실, 관리사무소, 마을회관, 도로
숙박시설지구	166,063	27.5	관광숙박·편의시설
상가시설지구	32,546	5.4	음식점, 상가
운동·오락시설지구	5,112	0.8	게이트볼장, 해수풀장
휴양·문화시설지구	39,335	6.5	야외공연장,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공원, 전망대, 조망휴게소
기타시설지구	255,861	42.4	녹지

2) 시설지구별 세부계획

구 분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비고
총 계		604,018	185,490	-	-	-	-
공공 편익 시설 지구	소 계	105,101	3,600	-	-	-	-
	주차장	22,954	-	-	-	-	가-1~2
	오수처리장	2,828	1,000	40.0	100.0	1	가-3~4
	샤워탈의장/화장실	451	350	40.0	100.0	2	가-5
	관리사무소	2,390	1,900	40.0	100.0	2	가-6~7
	마을회관	436	350	40.0	100.0	2	가-8
	도 로	76,042	-	-	-	-	-
숙박 시설 지구	소 계	166,063	132,850	-	-	-	-
	관광숙박·편의시설	166,063	132,850	40.0	100.0	2,4	나-1~16
상가 시설 지구	소 계	32,546	25,120	-	-	-	-
	음 식 점	3,217	2,500	40.0	100.0	2	다-1~2
	상가	29,329	22,620	40.0	100.0	2	다-3~10
운동오락지 구	소 계	5,112	-	-	-	-	-
	게이트볼장	1,065	-	-	-	-	라-1
	해수풀장	4,047	-	-	-	-	라-2
휴양 문화 시설 지구	소 계	39,335	23,920	-	-	-	-
	야외공연장	498	-	-	-	-	마-1
	청소년수련원	10,884	8,700	40.0	100.0	4	마-2
	야 영 장	6,466	5,120	40.0	100.0	2	마-3~4,9
	공 원	8,563	3,400	40.0	100.0	2	마-5~6
	전 망 대	6,492	5,000	-	-	-	마-7
	조망휴게소	6,432	1,700	40.0	100.0	4	마-8
기타 시설 지구	소 계	255,861	-	-	-	-	-
	녹 지	255,861	-	-	-	-	바-1

사. 사 업 비 : 변경없음

아. 관계도면 : 실음생략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송정 관광지	관광·휴양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707번지 일원	604,018	-	604,018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가) 총괄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604,018	100.0	
공공편의시설지구	105,101	17.4	
숙박시설지구	166,063	27.5	
상가시설지구	32,546	5.4	
운동·오락시설지구	5,112	0.8	
휴양·문화시설지구	39,335	6.5	
기타시설지구	255,861	42.4	

나) 세부시설 결정조서

도입시설지구			시설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			증·감	비고
구분	면적(㎡)	비율(%)	시설명	면적(㎡)	비율(%)		
총면적	604,018	100.0					
공공편의 시설지구	105,101	17.4	소계	105,101	100.0		
			주차장	22,954	21.8		
			오수처리장	2,828	2.7		
			샤워탈의장/ 화장실	451	0.4		
			관리사무소	2,390	2.3		
			마을회관	436	0.4		
숙박시설 지구	166,063	27.5	소계	166,063	100.0		
			관광숙박·편의시설	166,063	100.0		
상가시설 지구	32,546	5.4	소계	32,546	100.0		
			음식점	3,217	9.9		
운동오락 지구	5,112	0.8	소계	5,112	100.0		
			게이트볼장	1,065	20.8		
휴양문화 시설지구	39,335	6.5	소계	39,335	100.0		
			야외공연장	498	1.3		
			청소년수련원	10,884	27.7		
			야영장	6,466	16.4		
			공원	8,563	21.8		
			전망대	6,492	16.4		
기타시설 지구	255,861	42.4	소계	255,861	100.0		
			녹지	255,861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

■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계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계	26	8,872	76,042	4	3,636	38,552	6	2,363	20,078	16	2,873	17,412
기정	중로	1	80	991	-	-	-	-	-	-	1	80	991
기정	소로	25	8,792	75,051	4	3,636	38,552	6	2,363	20,078	15	2,793	16,421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80	소로1-1	소로2-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	10	보 조 간선도로	2,053	1125-4도	1009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95	1218-1도	소로2-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	10~13.5	국지도로	903	소로2-5	962-3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85	소로1-1	소로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	8	보 조 간선도로	565	소로1-1	산325-2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444	소로1-1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1	소로2-1	소로2-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713	소로1-1	소로2-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	9	국지도로	462	소로2-4	소로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	7	국지도로	578	소로1-1	727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73	소로3-6	소로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	6~7	국지도로	805	소로2-2	1034-5잡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7	소로1-1	1030양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55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70	소로3-3	소로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32	소로2-4	산327-1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34	소로2-4	1462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	7~11.5	국지도로	48	소로1-3	896-2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57	소로1-1	산348-12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	1.5	산책로	18	소로3-3	소로3-13	산책로			
기정	소로	3	12	6.0	국지도로	67	소로3-1	1230-1전	산책로			
기정	소로	3	13	3~4	산책로	678	소로3-3	산281-8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4	1.5	산책로	14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5	2.0	산책로	13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6	1.5	산책로	12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나)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954	-	22,954		
기정	가-1	주차장	미조면 송정리 1139일원	19,773	-	19,77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가-2	주차장	미조면 송정리 1007-2일원	3,181	-	3,18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다)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28	-	2,828		
기정	16	송정 하수도1	미조면 송정리 1176-1	1,430	-	1,430	남해고시 2009-10 (2009.2.2)	
기정	가-3	송정 하수도2	미조면 송정리 1018	1,398	-	1,39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라)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563	-	8,563	-	
기정	마-5	송정 공원1	소공원	미조면 송정리 754	927	-	92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마-6	송정 공원2	소공원	미조면 송정리 752	7,636	-	7,636	경남고시 2015-173 (2015.4.9)	

# 남 해 군 공 보

(14) 제 722 호

2022년 6월 21일

## 마)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255,861	-	255,861	-	
기정	바-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369-1번지 일원	14,817	-	14,81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76-2번지 일원	47	-	4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70번지 일원	397	-	39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4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36-1번지 일원	11,304	-	11,30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5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7-3번지 일원	1,331	-	1,33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6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7번지 일원	541	-	54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7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4번지 일원	445	-	44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8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3번지 일원	621	-	62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9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3-1번지 일원	424	-	42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0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753번지 일원	3,123	-	3,12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748번지 일원	6,964	-	6,96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06-1번지 일원	2,782	-	2,782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05번지 일원	190	-	190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4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40-24번지 일원	778	-	77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5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50번지 일원	84,095	-	84,09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바-16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48-12번지 일원	6,518	-	6,51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7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857-6번지 일원	20,832	-	20,832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8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31번지 일원	9,646	-	9,646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9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837-6번지 일원	443	-	44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0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22-2번지 일원	113	-	11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54-2번지 일원	63,651	-	63,65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24-1번지 일원	12,995	-	12,99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904번지 일원	13,804	-	13,80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604,018	-	604,018	
공공 편의 시설 지구	가	소계	105,101	-	105,101	
		가-1	19,773	미조면 송정리 1139번지 일원	19,773	주차장
		가-2	3,181	미조면 송정리 1007-2번지 일원	3,181	주차장
		가-3	1,398	미조면 송정리 1018번지 일원	1,398	오수처리장
		가-4	1,430	미조면 송정리 1176-3번지 일원	1,430	오수처리장
		가-5	451	미조면 송정리 1175-6번지 일원	451	샤워탈의장/화장실
		가-6	1,063	미조면 송정리 1124-6번지 일원	1,063	관리사무소
		가-7	1,327	미조면 송정리 1067-15번지 일원	1,327	관리사무소
		가-8	436	미조면 송정리 1065번지 일원	436	마을회관
		-	76,042	-	76,042	도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숙박 시설 지구	나	소계	166,063	-	166,063	
		나-1	7,073	미조면 송정리 1230-2번지 등 일원	7,07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2	25,852	미조면 송정리 1104번지 등 일원	25,852	관광숙박·휴게시설
		나-3	3,045	미조면 송정리 719-1번지 등 일원	3,045	관광숙박·휴게시설
		나-4	2,072	미조면 송정리 1036번지 등 일원	2,072	관광숙박·휴게시설
		나-5	4,827	미조면 송정리 1030번지 등 일원	4,82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6	18,687	미조면 송정리 855번지 등 일원	18,68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7	10,698	미조면 송정리 857번지 등 일원	10,698	관광숙박·휴게시설
		나-8	8,164	미조면 송정리 854번지 등 일원	8,164	관광숙박·휴게시설
		나-9	7,290	미조면 송정리 830번지 등 일원	7,29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0	6,157	미조면 송정리 839번지 등 일원	6,15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1	6,553	미조면 송정리 837번지 등 일원	6,55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2	4,090	미조면 송정리 847번지 등 일원	4,09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3	4,520	미조면 송정리 878번지 등 일원	4,52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4	10,813	미조면 송정리 1009번지 등 일원	10,81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5	24,587	미조면 송정리 903번지 등 일원	24,58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6	21,635	미조면 송정리 896-1번지 등 일원	21,635	관광숙박·휴게시설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상가 시설 지구	다	소계	32,546	-	32,546	
		다-1	1,984	미조면 송정리 1122번지 일원	1,984	음식점
		다-2	1,233	미조면 송정리 1119번지 일원	1,233	음식점
		다-3	1,665	미조면 송정리 1126번지 등 일원	1,665	상 가
		다-4	634	미조면 송정리 1221번지 등 일원	634	상 가
		다-5	4,764	미조면 송정리 1226번지 등 일원	4,764	상 가
		다-6	560	미조면 송정리 1034-4번지 등 일원	560	상 가
		다-7	9,251	미조면 송정리 870번지 등 일원	9,251	상 가
		다-8	7,083	미조면 송정리 1019번지 등 일원	7,083	상 가
		다-9	1,982	미조면 송정리 1007-1번지 등 일원	1,982	상 가
		다-10	3,390	미조면 송정리 862번지 등 일원	3,390	상가
운동 오락 시설 지구	라	소계	5,112	-	5,112	-
		라-1	1,065	미조면 송정리 1167번지 일원	1,065	게이트볼장
		라-2	4,047	미조면 송정리 1038번지 일원	4,047	해수풀장
휴양 문화 시설 지구	마	소계	39,335	-	39,335	
		마-1	498	미조면 송정리 1175-6번지 일원	498	야외공연장
		마-2	10,884	미조면 송정리 1175-4번지 일원	10,884	청소년수련원
		마-3	4,063	미조면 송정리 1124-9번지 일원	4,063	야영장
		마-4	1,245	미조면 송정리 880번지 일원	1,245	야영장
		마-5	927	미조면 송정리 754번지 일원	927	공 원
		마-6	7,636	미조면 송정리 752번지 일원	7,636	공 원
		마-7	6,492	미조면 송정리 892번지 일원	6,492	전망대
		마-8	6,432	미조면 송정리 산352-4번지 일원	6,432	조망휴게소
		마-9	1,158	미조면 송정리 1142번지 일원	1,158	야영장
기타 시설 지구	바	소계	255,861	-	255,861	
		바-1	255,861	미조면 송정리 1369번지 등 일원	255,861	녹 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공공 편익 시설 지구)	가-1 / 가-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권 장 용 도	주차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가-3 / 가-4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원순환관련시설
			권 장 용 도	오수처리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1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5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샤워탈의장 / 화장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6 / 가-7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관리사무소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8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마을회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나 (숙박 시설 지구)	나-1 ~ 나-10 / 나-12 ~ 나-15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
			권 장 용 도	관광숙박·편의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나 (숙박 시설 지구)	나-11 / 나-16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
			권 장 용 도	관광숙박·편의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높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다 (상가 시설 지구)	다-1 / 다-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음식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높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 고 한 도	(기정)2층 이하 → (변경)3층 이하
	최 저 한 도	-		
	다-3 / 다-10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권 장 용 도	상 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높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 고 한 도			(기정)2층 이하 → (변경)3층 이하	
최 저 한 도	-			
라 (운동·오락 시설 지구)	라-1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권 장 용 도	게이트볼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높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라-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권 장 용 도	해수풀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높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 (휴양·문화 시설 지구)	마-1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권 장 용 도	야외공연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높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마 (휴양·문화 시설 지구)	마-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권 장 용 도	청소년수련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3 / 마-4 / 마-9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련시설	
			권 장 용 도	야영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5 / 마-6	용도	지 정 용 도	-	
			권 장 용 도	공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7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 장 용 도	전망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마-8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 장 용 도	휴게소 / 전망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바 (기타 시설 지구)	용도	지 정 용 도	-		
		권 장 용 도	녹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위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다 (상가 시설 지구)	다-1 ~ 다-10	·높이 최고한도 - (기정) 2층 이하 <b>(변경) 3층 이하</b>	· 관광지 개발 및 민간투자자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함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810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지방도1024호(영지~시문) 선형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명)	사업 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지방도1024호(영지~시문) 선형개선사업	경남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 : 0.68km</li> <li>◦ 폭원 : 17.5m ~ 22.0m</li> <li>◦ 면적 : 25,571㎡</li> </ul>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2. 토지출입내용

- 가. 출입사유 : 조사·설계,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 나. 출입기간 : 2022. 6. 9. ~ 사업종료시 까지
- 다. 출입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및 열람

- 가. 토 지 :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일원
-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 일체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2. 6. 9. ~ 2022. 6.23.
- 열람 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4)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 ※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5-860-33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 (<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남해군 공고 제2022-812호

###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이 시행하는 「농어촌도로(창선면207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2022. 3. 3.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6월 9일

###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농어촌도로(창선면207호선) 개설공사
- 2. 사업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 오용리 일원
-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2. 3. 3.)
- 5. 공고 기간 : 2022. 6. 9. ~ 2022. 6. 24.(15일)
- 6.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또는 토지소재지	비 고
1	정재*	(주소)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괴정3동 448-** (토지)경남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94-2	공시송달 대상

###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 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남해군 건설교통과 (☎ 055-860-3314)

남해군 공고 제2022-813호

##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

### 2. 제정이유

신체적·경제적 상황,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과 노인급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계획수립(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시기, 급식기관의 요건, 모집 등(안 제4조 ~ 제6조)
- 라. 급식기관의 책무, 비용징수, 지도점검 등(안 제7조 ~ 제11조)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6월 8일 ~ 6월 28일까지(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2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우)52419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36 팩스 055-860-3882
  - 이메일 kh8913@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5-860-38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경제적 상황,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노인(노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남해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군수가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 법인·단체 중 노인급식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시설 등을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노인이 지정된 급식장소에서 무료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이 급식장소 외의 장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급식장소”란 군수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노인급식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노인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급식기관의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평균 노인급식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급식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급식을 하는 시설 등도 급식기관으로 본다.

**제6조(급식기관 모집)** ① 군수는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식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기관의 노인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급식기관의 책무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 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비용 징수 등)** ①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다른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급식 제공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 가스, 취사시설, 소방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급식기관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① 급식기관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과 새마을 부녀회원,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되고 노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교부 및 노인급식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각각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노인급식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22-821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권금0, 서의0	주소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00
	소하천명			
아산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491번지(354관련)		
	면적	1 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22. 6. 10.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매설		

남해군 공고 제2022-830호

##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남해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선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대우 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 변경

-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남해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안 제2조) 실효성을 상실한 용어 정리 및 정의의 명확화

- 실효성을 상실한 “자동차세 연납자”, “세외수입 부과액 납기내 납부자”,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 관련 목 삭제



- “지방세”의 의미를 군세로, “성실납세자 등”의 의미를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정의하여 명확히 규정함
- 다. (안 제3조) 지원대상자 기준 마련
  - 남해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등”으로 명시함
  - 매년 1월 1일을 선정기준일로 하여 직전 3년간 체납여부 및 지방세 납부액 기준 명시함
- 라. (안 제4조) 대상자 선정 규정 정비
  - 선정된 자는 이후 3년간 선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마. (안 제5조) 성실납세자 확인서 발급 기한 보완
  - “선정일부터 1년 이내” ⇒ “선정일이 속한 당해”로 성실납세자 선정 해당년도로 발급 기한을 명시하여 선정일의 변동에 따른 혼란 방지
- 바. (안 제6조) 지원방안 정비 및 신설
  - 성실납세자 10만원 이내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으로 지원 규정 명확화
  - 군채정 확충 유공납세자 감사패 수여 및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으로 지원방안 신설
  - 실효성 상실한 지원규정 폐지
    - : 교통상해보험 가입, 세외수입 납기내 납부자 지원,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 납부율 우수마을 지원

4. 의견제출

- 가. 의견 제출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83,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860-31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남해군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과 지방세정 우수읍면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성실납세자등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등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 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 나. 직전년도 고지서 1매당 합계액 2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 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 나. 직전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 1) 개인 및 단체: 1천만원
    - 2) 법인: 2천만원
    - 3) 해당 금액 이상의 유공납세자가 없을 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 가) 개인 및 단체: 5백만원
      - 나) 법인: 1천만원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지방세정 우수읍면은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정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납세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다만,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이후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방세 납부액 및 군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만,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이후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 우수읍면 선정은 징수실적 및 시책추진 우수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5조(성실납세자등의 선정 통보 및 증명)**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개인등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자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등 확인서는 선정일이 속한 당해에 한하여 발급한다.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등
    - 가. 납세자의 날 등에 감사패 수여
    - 나.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 우수읍면에게는 시상금 및 사업비 지원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 833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13일


## 남 해 군 수

1. 사용 및 폐기 개시일 : 2022. 6. 10.
2. 사유 : 공인 노후화(마모)로 폐기한 후 새로 제작하여 재등록
3. 등록, 폐기 공인명·인영

### 가.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고현면장인	2.1cm 정사각형 (한글전서체)	폐기		고현면

### 나. 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고현면장인	2.1cm 정사각형 (한글전서체)	등록		고현면

끝.

남해군 공고 제2022-851호

##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 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6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2. 8. ~ 2024.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상주면 양아리 산291번지 일원	.사면정비 L=269.0m,	남해군/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2. 6. 16.~2022. 6. 30.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6. 16.~2022. 6. 30.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순 위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상주면 양아리	산291	임	102	2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박태O
2	"	산290	임	12,099	2,62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김해김O
3	"	808	전	69	6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전만O
4	"	809	전	112	112	.	김영O
5	"	산289-1	임	3,339	866	부산 서구	김옥O
6	"	812	전	258	25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빈영O
7	"	813	전	655	28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김태O
합 계				16,634	4,239		

남해군 공고 제2022-852호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남 해 군 수

###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출입구간 : 상주면 양아리 산291번지 일원

### 2. 출입기간 : 2022. 7. ~ 사업 종료 시까지

###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2-857호

###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7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량	기간	비고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고현면 갈화리 1549-4번지 일원	사면정비 L=134.0m	2022. ~ 2024. 12.	

####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 남해군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3.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개별통지문 발송 및 열람장소에 비치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549-1번지 외 10필지 2,723㎡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붙임 조서 참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함

**4.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2. 6. 17. ~ 2022. 7. 1.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다) 이의신청 : 남해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보상담당으로 서면제출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22년 8월 ~ (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 시 3인)
  -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 이사, 수령거부,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 안전과 자연재난팀(☎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예정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1부.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남해	고현	갈화	1549-4	전	539	539	정막O	남해군 고현면					
2	남해	고현	갈화	1548-1	전	261	261	강용O	부산광역시 사하구					
3	남해	고현	갈화	1520-2	전	790	790	김환O	남해군 고현면					
4	남해	고현	갈화	1522	전	512	512	유영O	남해군 고현면					
5	남해	고현	갈화	1520-3	전	218	218	김호O	남해군 고현면					
6	남해	고현	갈화	1772	도	3,298	24	국	국(국토교통부)					
7	남해	고현	갈화	1517	전	202	202	김호O	남해군 고현면					
8	남해	고현	갈화	1516-5	대	8	8	임규O	남해군 고현면	새남해 OO				
9	남해	고현	갈화	1516-4	대	132	132	김경O	부산광역시 북구	고현 OO				
10	남해	고현	갈화	1515-1	대	35	35	하삼O	남해군 고현면	삼OO				
11	남해	고현	갈화	1521-3	전	2	2	김호O	남해군 고현면					
계							2,723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물건 종류	단위	면적 및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내용	
1	남해	고현	갈화	1594-4	본묘	기	1	정막O	남해군 고현면				
2	남해	고현	갈화	1522	유지나무	주	8	유영O	남해군 고현면				
					감나무	주	5	유영O	남해군 고현면				
					블루베리	주	8	유영O	남해군 고현면				
					매실나무	주	2	유영O	남해군 고현면				
계							24						

남해군 공고 제2022-864호

###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 2. 개정이유 : 남해군 남면 홍현리 홍현1리 주민들의 마을명칭 변경 요구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남면 홍현리 관할구역 명칭 변경 : 홍현1 → 홍현
- 나.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개정

읍면별	리명	정원	관할구역
남면	홍현리	3	홍현1, 무지개, 가천



읍면별	리명	정원	관할구역
남면	홍현리	3	홍현, 무지개, 다랭이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전화 860-3115,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면 홍현리의 관할구역란 중 “홍현1” 을 “홍현”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865호

###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주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 보호 등 주민 숙원사항 해소를 위한 법정리 구역 변경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
- 3. 주요내용
  - 가. 남해읍 북변리, 상주면 양아리 관할구역 변경
  - 나. 별표 리 명칭과 구역 개정

읍면별	리명칭	관할구역
남해읍	북 변 리	북변리 일원
상주면	양 아 리	양아리 일원



읍면별	리명	관할구역
남해읍	북 변 리	북변리 일원, 아산리 중 아산리 1412-12번지
상주면	양 아 리	양아리 일원, 상주리 중 상주리 산444번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전화 860-3115,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해읍 북변리 관할구역란 중 “북변리 일원” 을 “북변리 일원, 아산리 중 아산리 1412-12번지” 로 하고, 같은 표 상주면 양아리 관할구역란 중 “양아리 일원” 을 “양아리 일원, 상주리 중 상주리 산444번지”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866호

###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반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남해군 남면 홍현리 홍현1리 주민들의 마을명칭 변경 요구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함

#### 3. 주요내용

가. 행정리 명칭 변경 : 홍현1 → 홍현(반, 구역 변동 없음)

나. 별표 남해군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개정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 수	반 명	구 역	비 고
남면	홍 현	홍 현1	3	1-3	일원	
		무지개	2	1-2	"	
		가 천	2	1-2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 수	반 명	구 역	비 고
남면	홍 현	홍 현	3	1-3	일원	
		무지개	2	1-2	"	
		다랭이	2	1-2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전화 860-3115,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면 홍현의 행정리별란 중 “홍 현1” 을 “홍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4호

## 2022년도 남해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2022년도 남해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11일

###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 분야 및 인원

임용 직위	임용직급 (등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직 무 내 용
남해군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1명	2년	1. 주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4.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5.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에 관한 사항 6. 공중보건조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 임용기간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임용신분

- 가.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나.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다음의 자격요건 ① ~ ⑤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되, 불가피하게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음



구 분		자 격 요 건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인자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경 력 기 준	공무원	③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⑤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의무,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약무, 간호, 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의사면허 소지자 가산점 부여

※ 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 면접시행 최종 예정일 기준

4. 보수 수준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130% 범위내에서 책정 가능

임용직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	63,430천원	

※ 연봉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2. 6. 23. ~ 6. 27.(3일간)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토·일제외)	2022.6.28.(화)	2022.6.29.(수) 남해군청	2022.7.4.(월)

⇒ 합격자 발표 :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 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형결과 책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장소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8.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나 남해군 내부의 응시자만 있을 경우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9.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2매 제출
    -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남해군수입증지(남해군청 내 민원지적과 판매) ▶ 5급이상 10,000원
    -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기타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남해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남해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행정담당 (☎055-860-3113)로 문의하시기 바람.